

의안번호	제 493 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월 일 (제 321 회)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3년 6월 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

의안 번호	49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년 6월 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진흥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 수립·시행(안 제3조)
-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(안 제5조, 제6조)
-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센터 설치·지정운영 근거 마련(안 제7조)
- 환경교육센터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·운영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진흥하고 도민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
1. 환경교육진흥법, 「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」 제21조 및 「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」 제30조에 의한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
2.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
3. 사회환경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
4. 환경교육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

②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·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충청북도 교육감(이하 “도 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사업자는 도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,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도민은 환경보전과 환경교육 진흥 발전을 위하여 도·시·군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자진 참여하여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.

제3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(이하 “환경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2.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·협력 방안
3.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
4.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5.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수 방안
6.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
7.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
8.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 교육감, 시장·군수와 그 밖에 관련 기관·단체의 장(이하 “관계기관의 장” 이라 한다)과 협의하고, 「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시행) ① 관계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하여 통보된 환경교육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추진 실적을 조사·분석·평가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.

제5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환경교육 및 관련 연구활동
4.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·운영

5.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
6.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7.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
8.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
9.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
10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①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5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도지사는 개인·단체·법인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(도내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교육센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2. 환경교육 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
3.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
4. 환경교육 수요조사 총괄
5. 프로그램 및 교재, 교구의 개발 및 보급

- 6. 환경도서관 운영
- 7.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
- 8. 지역환경교육센터의 통합 관리

③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지역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
- 2.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수요조사, 프로그램, 교재 및 교구 보급
- 3. 지역의 민간단체, 학교,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교육 지원·조정
- 4.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

④ 도지사가 제1항의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「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조 [별표1]의 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제1항의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제4항의 세부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.

제8조(환경교육의 위탁·운영 등)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전문적인 진흥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예산 및 재정지원 등)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(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도 환경

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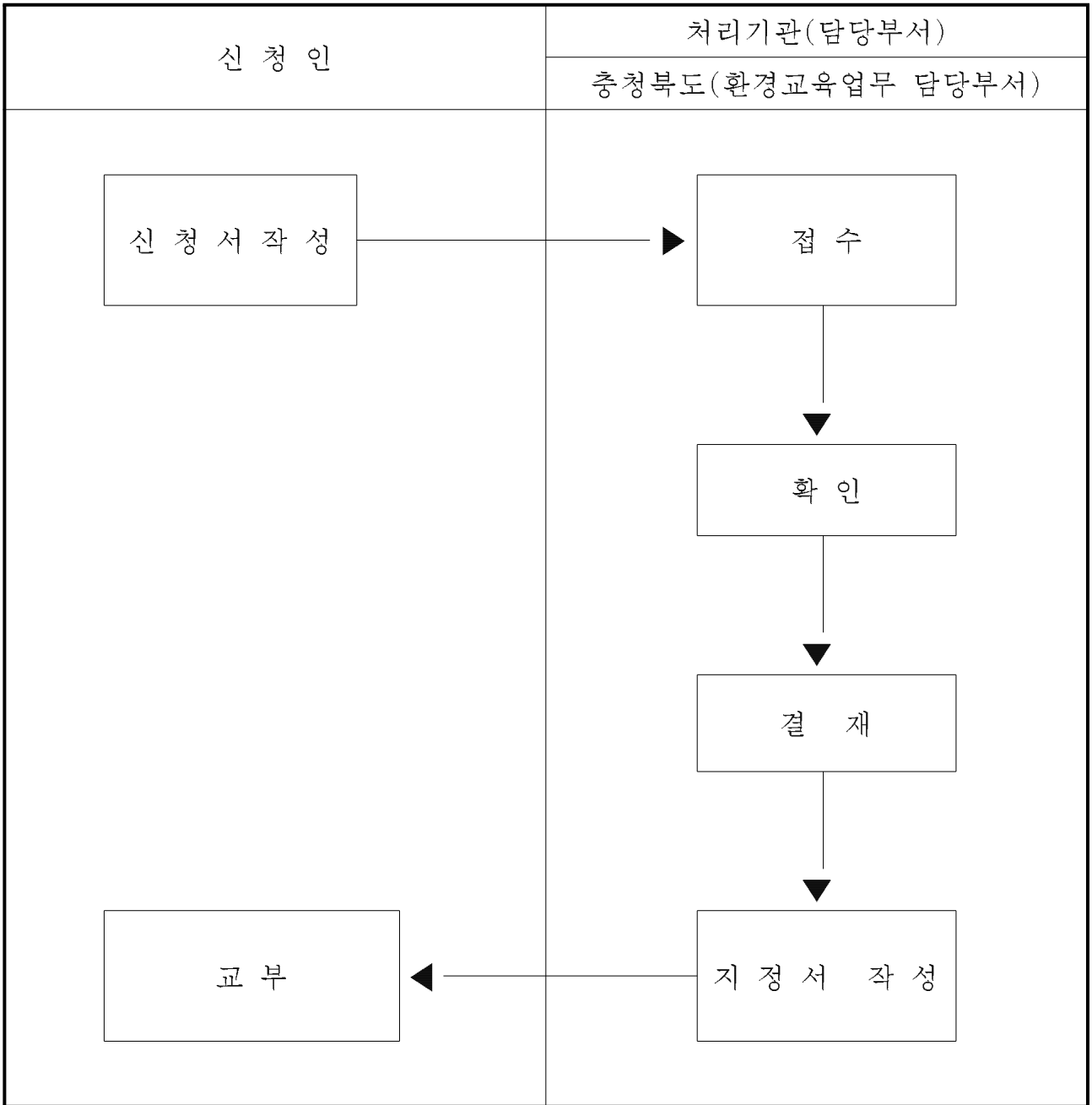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		처리기간
		30 일
신청인	①기관명 (법인명)	②대표자
신청내역	③주소 (인터넷주소 포함)	(전화번호:)
신청내역	④환경교육센터 명칭	⑤대표자
	⑥환경교육센터 소재지	(전화번호:)
	⑦개설 예정일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「충청북도환경교육진흥조례」 제7조제5항에 따라 ○○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50px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margin-left: 50px;">충청북도지사 귀하</p>		
구비서류 1. 사업계획서 1부 2.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 3.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.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		수수료 없음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

[별지 제2호서식]

지정번호	환경교육센터 지정서	
제 호		
1. 환경교육센터의 명칭		
2. 대 표 자		
3. 소 재 지		
<p>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「충청북도 환경교육진흥조례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○○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</p>		
년 월 일		
충청북도지사 (직인)		

관련법령 발췌

□ 환경교육진흥법

- 제4조(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-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)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제6조(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)**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4 ~ 2017(5년)
- 총사업비 : 2,700백만원
- 주요 사업내용
 - 충북 환경교육한마당 개최
 -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사업
 -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사업
 - 환경교육센터 지정·운영 등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학교·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충북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등 환경교육 진흥사업비

3. 관련조문

-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(안 제5조,제6조)
- 환경교육센터의 지정·운영 (안 제8조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('13~'17)사업비를 기초로 산출

나. 추계 결과

- 총 사업비 2,700백만원
 - '14년 220백만원, '15년 620백만원, '16년 620백만원, '17년 620백만원, '18년 620백만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환경보전기금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안석영

(전문기관 : 충북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배명순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5차년도 (2018년)	계
세 입	3,600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
환경보전기금	3,600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
세 출	220	620	620	620	620	2,700
충북 환경교육한마당 개최	150	150	150	150	150	750
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사업	20	20	20	20	20	100
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사업	50	50	50	50	50	250
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	-	100	100	100	100	400
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	-	300	300	300	300	1,200
재원 조달	220	620	620	620	620	2,7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	환경보전기금	220	620	620	620	620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특별회계						
시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